

서울특별시의회
제321회 정례회
교통위원회

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안설명



2023. 12.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이 경 숙

□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장님!

그리고 교통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,

국민의힘 도봉구 제1선거구 출신 이경숙 의원입니다.

□ 의안번호 제1326호 「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
□ 본 개정안의 취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대여 사업자의 준수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이용자 안전을 증진하고자 했습니다.

□ 이용자와 대여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, 이용자의 안전운행 및 주차질서 이행 등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한편, 안전장비 보관장치 설치와 이용자격 확인 등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했습니다.

□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 민원, 안전수칙 준수, 안전사고 저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, 제출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□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